



VIII. 필리핀

1. 진입장벽 특징 • 347
2. 도입 취지 및 배경 • 347
3. 주요 진입장벽 (유형별) • 348
4. 진입장벽의 피해 사례 • 353
5. 진입장벽별 파급효과 및 영향 • 355
6.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 356
7. 기 타 •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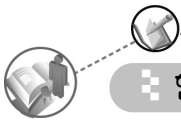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VIII

1. 진입장벽 특징

- 자국 농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농민들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엄격히 제재
- 세관 및 식약청 실무자들의 부패 및 비리가 심함
- 법률 혹은 규제 변경 시 변경 안내공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에 대한 절차나 기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 제공기관이나 업체가 매우 적음
- 외국인 수입업자들에 대한 현지 정부기관들의 제재가 많음
- 외국인 수입업자들의 수입 경로 및 기타 규제 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짐
- 관세책(Tariff Book)의 업데이트가 늦으며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입업자들이 Tariff Book 보유에 어려움이 있음

2. 도입 취지 및 배경

- 자국 농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자국 농민들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 되는 농식품의 수입을 엄격히 재제하고 있음
- 법률 변경 시 공지 사항을 늦춰 후에 통관 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내포 되어 있음
- 수입업자에 대한 세관의 공권력이 강력함을 이용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었음



- 세관의 부패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며 그 대처 능력 또한 시간이 오래 걸려 수입업자들이 목인하는 경우가 많음

3

주요 진입장벽 (유형별)

가. 개요

- 접근 용이한 국가기관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매우 적음
- 법률 변경 시 공지가 매우 느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음
- 국가기관 세관이나 식약청 직원들의 안이한 업무 처리
- 한국 제품들의 한문 표기로 중국제품으로 오인 통관 지연 사태 발생 (중국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더욱 강화)
- 한국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납품하는 업체의 증명서 요구
- 필리핀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생산되는 농식품은 수입 금지나 혹은 수입 제한
 - 해당품목 생산시기에는 수입금지, 그 외 기간에는 수입 허용 등
- 가격 제한 조치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강도는 높지 않음
- 품질 규제 및 품질 인증은 해당 국가의 식약청이나 검역소의 보증 및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
- 한국 정부의 식약청과 검역소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
- 라벨링의 경우 멜라민 파동 전에는 라벨링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 라벨링은 모두 영어나 타갈로그어 라벨링이 필수임
 - ❖ 기타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저품질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음



나. 유형별 진입장벽

1) 수입정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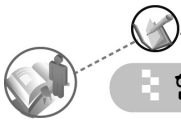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재배 철에는 제한이 되고 있음
 - 딸기,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제한되어 있으나, 딸기의 경우 재배철이 제한되어 있어 재배철이 아닌 시기에는 수입이 가능함
 - 단, 한국산 딸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하며, 한국산 과일 중 필리핀에서 수입이 허가된 품목은 배, 감, 사과 3종류뿐임

2) 가격제한 조치

- 농식품이나 식품류에는 수입과징금 부여 및 기타 관세가 심하게 부과되지는 않으며, 가격 제한 조치나 기타 관세는 저렴한 편이나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다른 중국산 보다 비싼 이유로 수입에 어려움이 있음

3) 기술·행정적 조치

- 기술 및 행정적 조치로는 큰 장벽을 두고 있진 않음. 그러나 중국 멜라민 파동으로 인하여 현지에 수입 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영문 표기를 필수화 하고 있고 현재는 시행 단계로 우선적으로 포장 박스에 대한 영문 표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2009년 1월부터는 모든 용기 및 내부 포장에 대한 영문 표기를 필수화가 시행됨
- 특히, 냉동 및 기타 냉장 제품 같은 경우 영문표기 스티커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제품들은 포장 용기에 영문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
- 원산지 표기 대한 엄격한 법률은 없으나 적발 시 벌금형에 부과되며, 동식물의 경우 HACCP나 기타 규제는 없음
- 규제에 대한 것은 자율화 되어 있으며 수출 당국의 검역소의 검역증을 포함하면 수입에 문제가 없음



- 한국산 육류일 경우 한우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한국산 돼지의 구제역 발병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함
- 연말연시 세관의 엄격함이 더해져 제품에 대한 서류 요구가 많아지며 평소에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요구 준비기간 동안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4) 사회적 규제

- 필리핀 현지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나 정리되지 않은 수입품들로 인해 대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산으로 둔갑한 싸구려 중국산으로 인해 한국산에 대한 품질 우선도가 인식 되지 않아 현지인들이 한국산의 특징이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함

5) 기타 규제

- 현지 중국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제품 원산지 둔갑으로 인해 (중국산 → 한국산) 한국산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국에서 수출하는 대기업들의 독점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지 수입업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2중 3중 수입이 이루어져 한국산 제품의 통일되지 않은 가격과 품질관리로 인해 한국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현지 뉴스에선 모 식품 유통업자의 창고에서 한국산 제품의 유통기한 위조를 취재, 현지인들과 교민들에게 한국제품의 구매를 저하 시키고 있음
- www.philcafe24.com 본 사이트의 신고/불만사항 게시판에 가면 현지 교민들의 한국식품에 대한 불신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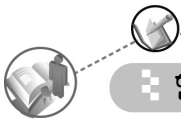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다. 관세·통관제도

1) 통관수속의 흐름

- 수입통관 수속의 흐름은 관세의 예납(사전에 계산한 관세를 은행에 예치하고 수입 신고서에 수령인을 받음), 수입신고, 서류심사, 화물검사, 수속료 등의 지불, 화물의 인수로 진행됨
- 수입신고의 단계에서 화물은 **Red**(서류심사, 화물검사), **Yellow**(서류심사만), **Green**(서류심사, 검사 없음)의 3종류로 분류됨
 - 분류의 기준은 수입품목, 수입자의 과거의 실적 등이며, 필리핀 관세국에 따르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 Red가 많고 Green은 적다고 함
- 2000년 3월부터 슈퍼그린군(SGL)이 도입되고 있음
 - SGL은 상기의 3종류 군을 거치지 않고 관세 등의 납세를 행하면 바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음
 - 대상이 되는 화물은 국내 소비용으로, SGL을 이용할 수 있는 수입자로 이하의 조건이 따르고 있음

< 수입자의 조건 >

- 1년 이상의 수입업무 실적이 있을 것
 - 지정받으려는 화물을 항상 수입하고 있을 것
 - 세관에 EDI에 따라 수입신고를 행할 것
 - 세관에 의한 사후조사를 받을 것
- 또한, 종래는 「관세, VAT의 세관 납부액이 상위 1,000개 업체 이내」라는 조건도 있었지만 2003년 11월에 이것이 철폐되고 이용되지 않고 있음
 - 필리핀 세관에 따르면 현재는 외자계 기업을 중심으로 100개 업체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함
 - EDI에 의한 수입신고는 기준에 도입되어 있지만 「컴퓨터 설비 등 인프라 투자가



- 필요하고 실제로 EDI에 의한 수속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적음」(필리핀 관세국)
- 단, 세관내는 앞서 말한 군분류 등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통관수속 자동처리 시스템(ACOS, Automated Customs Operations System)이 도입되고 있음
- 또한, 필리핀 관세국이 JICA의 협력을 얻어 2003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상화물이며 국내 소비용 화물의 경우 항구로의 도착부터 화물의 인수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5.2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관세평가제도

- 2000년 1월1일부터 GATT 제7조를 토대로 WTO 관세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수입화물의 거래가격(현실지부가격+가산요소)이 과세의 대상이 됨

3) 관세분류제도

- 필리핀은 HS조약에 가맹하고 있어 1988년부터 HS코드에 의해 품목분류가 행해지고 있다. 2004년 3월부터는 AHTN을 도입하고 있어 ASEAN 역내, 역외와의 무역 모두 AHTN이 사용되고 있음
- 사전교시제도는 기존에 도입되어 있다. 관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샘플 등의 제출에 따라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답하며, 그 정보는 국내 전체의 세관에 통지됨

4) 조정제도(이의신청제도)

- 분류/평가로 불복이 있는 경우는 평가/분류검토위원회(VCRC,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Review Committee)에서 검토함
- 관세국장이 위원장이며, 20일 이내에 결론이 도출됨
 - 그 기간중 화물은 담보를 납부함으로써 인수할 수 있음
- VCRC의 검토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는 재무성의 위원회에서 검토 하게 되고, 또 불복하게 되면 재판소에서 소송하게 됨

5) 사후조사제도

- 수입자는 3년간, 통관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됨. 사후조사도 대상은 과거 3년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조사제도는 2004년 1월에 발족되었음



6) 기타(패널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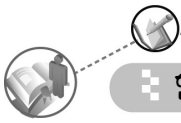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관세법 3610조에 따르면 수입에 관한 기록의 보관을 게을리 할 경우 10만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2년과 1일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또한, 관세법 3611조에 따르면, 사후조사에 대한 납세부족이 판명된 경우의 벌칙은 아래 3단계로 나누어짐
 - ① 과거 : 수입자의 합리적인 주의와 신고가 정확하다고 확인할 능력의 태만(부족)에 의한 경우 납세부족분의 2분의 1 이상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② 중대한 과실 : 납세부족이 관련된 사실을 실제로 알면서도 납세의무를 무시, 무관심에 의해 발생된 경우 납세부족분의 2와 2분의 1이상 4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③ 허위 : 고의, 자발적,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것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경우 납세부족분의 5배에서부터 8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과하고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4

진입장벽의 피해 사례

가. 한국산 피해사례

- 필리핀 검역소에서 한국산에서 수출된 냉동 제품 어묵 및 생선류에 한국 검역소의 서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냉동 20ft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억류 하여 1일 100 달러의 냉동컨테이너 이용료와 shipping yard 사용료로 엄청난 이득을 챙김. 컨테이너는 검역소 서류 불충분으로 폐기 처분
- 채소류의 통관시 채소류가 현지에서 보는 채소보다 크기가 크고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서류 요구(유전자 변이 사용여부 및 원산지 해당국가의 보증 서류). 결국 통관 불허로 20ft 컨테이너 채소 폐기 처분



나. 일본계 기업 피해사례

< 잦은 컴퓨터 시스템의 장애 >

- 필리핀에 있는 많은 일본계 기업이 수출가공지역(PEZA)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관에서의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러한 여건에서 필리핀 주재 일본계 기업의 인터뷰 조사에는 「통관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지적이 많음
- 일본계 제조업체 대상 앙케이트 조사에도 무역제도면에서의 문제 중에서 「통관에 요하는 시간」을 선택한 기업은 응답 기업(117사)의 41.3%로 4할을 초과하였음
 - 통관업자에 따르면 「PEZA기업(수출가공지역)의 경우는 수입신고로부터 1일~2일에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지만 통상의 수입의 경우에는 2일에서부터 5일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함
- 통관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세관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임
 - 이는 정전, 설비의 노후화 등이 원인인 듯 하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된 경우 복구까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됨. 정상가동까지 대체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항만의 통관사무소가 컴퓨터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1-2시간 업무를 정지하게 되어 버려 통관이 지연된 사례도 있음
- 기타 통관의 지연과 관련되어 국세법의 규정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한 「ATRIG (Authority to release imported goods 인수증)」의 발행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ATRIG」는 歳入局에 신청하고 취득하는데, 「바탕가스항」에서는 ATRIG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하며 ATRIG 발행에는 약 3일이 소요됨(日系 제조업자)

< 광범위하게 취급되는 시설이용료 >

- 필리핀에도 관세분류와 평가에 관하여 세관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다른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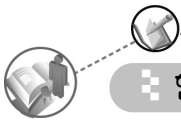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세관담당관에 의한 관세분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 「통관수속이 담당관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담당관의 재량권 등을 배경으로 시설이용료라고 불리는 불명료한 요금의 요구는 통관수속의 각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태임
 - 「거의 전체 수속에서 시설이용료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계를 수입할 경우 성능은 어떨까? 매뉴얼은 어떨까? 카탈로그를 제출해라 등 다양하게 요구되어 시설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전체가 교섭의 대상으로 느껴지고 있다. 화물검사도 거의 모든 경우에 실시되고 있어 그 경우에도 시설이용료가 요구된다.」(日系통관업자)
- 통관수속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 日系제조업자 앙케이트에서 문제점으로 「물류인프라의 정비상태가 불충분」라고 회답한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 54.8% (57개 업체)에 이룸
 - 크레인 등의 항만설비의 불비(不備), 고장으로 인해 화물의 인수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음

5

진입장벽별 파급효과 및 영향

■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직접적 영향

- 필리핀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식품이 매우 적어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김치를 소개하며 한국 농식품을 판매하려고 해도 배추 및 무에 대한 수입허가가 나지 않아 김치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농식품의 공급이 불가능함
- 현지 세관의 부패로 인하여 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특히 중국산과의 경쟁력이 저하됨



■ 자국 및 타국산과의 경쟁 등 간접적 영향

- 중국산 제품들의 한국산 둔갑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에 대한 재제가 엄격하지 않아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런 경우 추후 한국산 제품이 들어올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며 제품의 품질 또한 의심을 받게 됨
- 또한 과일에 대한 인지도가 적어 배, 단감에 대한 필리핀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배에 대한 교육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에서 제배된 신고 배가 한국산 배로 둔갑하여 제일 많이 팔리고 있으며 소매업자들이 가격에서 중국산 배가 저렴하단 이유로 한국산 배를 구입하지 않고 중국산 배를 구입하여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소형 소매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형 SM 같은 슈퍼마켓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임

6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 한국에서 수출 시 다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 내에서 통관시 갑작스런 서류 절차에 맞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수출 이후 이미 한국을 떠난 제품들의 사후 서류 발급이 어려우나 추후에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관시 갑작스런 서류 준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한국에서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이 해당국가의 필요 서류에 대해 지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후진국으로 간주 하여 서류준비에 누락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음
- 현지 정부 부패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방안은 없을 것이나, 현지 한국산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현지정부의 부패를 이용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함



- 필리핀 주재 日系기업은 수출가공지역(PEZA)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통관에서의 문제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세관의 컴퓨터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 등 하드웨어 측면의 정비가 다른 ASEAN 국가(신규 가맹국 제외)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통관 소요시간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인프라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7 기 타

- 필리핀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식품류에 유통이 원활하였으나 중국 멜라민 파동으로 가장 기본적인 통관 법률에 대한 (라벨링이나 현지 정부기관 보증서류) 필요 절차가 까다로워짐
-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필리핀 정부의 안이함을 이용하여 밀수 및 기타 서류를 빼고 통관하려는 것을 미연에 한국 수출할 때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또한 수출 후 서류 준비가 불가하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서류(health certificate) 등에 대한 서류 발부 시간을 단축시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빠른 통관으로 빠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

